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정1357 판결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정1357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의정부시 D, 3층에 있는 사단법인 E 협회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협회에서 에어로빅강사 교육 과정을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육과정을 그만둔 뒤 피해자로부터 강의료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3경 동두천시 F아파트 2동 304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E 협회 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성질난다고 다 죽어가는 사람 끌어다가 각서 쓰게 해 내쫓아 버립니다. 어느 누가 두 달 남겨두고 도중하차하고, 돈 6,000,000원을 돈을 2달 운동하고 곧 두 달 있음 자격증이 생기는데 포기하고 버립니 까? 끝까지 법적 투쟁 벌리고 배너 시위까지 갑니다. 더 이상의 교육생, 피해보는 피는 물 흘리는 사람이 없기에 목숨 걸고 온 세상에 알립니다. 이 협회는 협회장이 사람이 기를 인간이기를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거부한 돈 밖에 모르는 사람 죽어가도 모르는 사람 장기도 팔아넘길 세상에도 없는 나쁜 인간 말종입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강제로 교육과정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그만두었고 피해자의 강압에 의하여 협회를 그만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협회 수강생 H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가리켜 "회장이 정신 상태며 악질인건 이 바닥에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 고. 사기꾼에다 돈 욕심에 사람 부려먹고 후려서서 내 쫓는 천벌 받을 인간이니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E 협회 수강생 I에게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가리켜 "그런 인간 어쩌다 만나서 나도 쓰러질 거 같아. 오빠도 쓰러졌고, 언젠간 죄받겠지, 사람들 사기 많이 당하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 피고인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협회장년, 내 오빠 살 려내, 천벌 받을 년"이라고 게시하고 2016. 11. 2.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네가 진거야, 협회장년, 겁쟁이, 야비한년", "구슬 박은 년, 협회장년 혓바닥 잘리겠 군, 비겁한 년"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23. 13:28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한 가닥 믿음을 가졌는데 져버린 댓가가 얼마나 크게 될지 당신의 악행, 세상에 낱낱이 밝히겠어, (중략) 회원들이 미친 XX 라더니 맞네.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동안. (중략) 우리 친오빠까지 알아버렸으니까 죽던 살던 돈이고 자격증이고 다 필요 없는 줄 알아. 내 몸에 배너 광고를 하던 대자보를 붙이던 그 협회 앞에서 알몸시위하던 석유 붓고 죽던 그렇게 할 테니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E 인터넷사이트
- 1.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1. 각서 사본
- 1. H에게 보낸 문자, I에게 보낸 문자
- 1.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입회원서, (사)E협회 교육비,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각 형법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